

재가노인복지시설(가칭 아현대이케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 9. 23.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19. 9. 9.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19. 9. 10.

다. 상정일자 :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2019. 9. 2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 제안설명자 :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신희선

가. 제안이유

노인성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을 위해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탁목적

-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생활밀착형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이용대상 노인 및 보호자 만족도 제고

- 데이케어센터 운영과 시설관리의 일원화로 업무 효율성 증대

2) 위탁내용

- 위탁기간: 5년

- 위탁운영 시설현황

- 시설명 : 아현데이케어센터(가칭)

- 위 치 : 마포구 마포대로11길 44-81

(아현문화건강센터 지하1층 지역커뮤니티센터)

- 면 적 : 317.25㎡

- 위탁사무 범위 : 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수탁기관 선정주체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별도구성)

3. 검토보고 (최종익 전문위원)

가. 제안 경위

- 본 동의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9.9.9.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11호로 2019.9.10.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상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3)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4)에 따라 아현데이케어센터(가칭)의 운영 및 관리 사무에 대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재가노인복지시설(가칭 아현데이케어센터)은 「노인복지법」 제39조 제1항5)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야간동안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편의제공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임.
- 참고로 2019년 9월 기준 마포구 전체 데이케어센터는 공덕동, 용강동 등 10개동에 15개소가 설치되었으며 아현동, 도화동 등 6개동은 아직까지 미 설치 되었으며 15개소 총 정원 389명 시설에 대기인원 189명으로, 이는 시설별 평균 정원이 25.9명으로 대기인원에 대비하면 데이케어센터 시설 7.3개소가 부족한 상황임.

3)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4)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구청장은 행정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사무의 내용, 위탁기간, 소요예산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전에 위임사무는 미리 해당 사무를 위임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신설 2015.9.24>

5) 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또한, 한국 노인인구도 2026년에는 초 고령사회⁶⁾ 진입이 예상⁷⁾됨에 따라 노인성질환 장기요양 수급자와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확충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다.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 본 건은 ‘(가칭)아현데이케어센터’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으로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⁸⁾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⁹⁾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무에 해당됨.
-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였으며, 위탁범위는 재가노인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경쟁모집으로 하며 수탁자선정심의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 바, 관련 규정에도 부합하다 판단됨.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동 사무의 민간위탁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6) 유엔 등 국제기구는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

7) 출처: 포털 ‘다음’ (주)천재교육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24XXXXX87087>)

8)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9) **제5조(운영의 위탁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4항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0.>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